

4.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입법예고

자료제공 : 건설교통부공고제 1998-120호 1998. 3. 25.

주요 골자

- 가. 외국법인은 세법상 비업무용토지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장·사무소용지 등 특정용도의 토지만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을 전면 폐지함.
- 나. 외국인은 체류상한이 5년인 비자(F-2비자) 소지자에 한해 200평 이하의 주거용지와 50평 이하의 상업용지를 취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비거주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이 토지 용도와 면적에 관계없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다. 외국법인 및 외국인 개인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허가를 얻도록 하고 60일내에 허가처리를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신고접수시 즉시 수리토록 함.
- 라. 우리 국민의 토지취득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정부 등에 대한 국내 토지취득을 제한하는 상호주의 규정과 군사지역·섬지역·문화재보호구역 등에 대한 취득제한 규정은 현행대로 존치함.

개정이유

외국인의 적극적인 국내투자를 유도하여 IMF 금융지원 이후의 외환부족사태를 극복하고 침체되어 있는 국내 주택산업 및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따른 제한을 전면 철폐하며,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